

## [남원]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

통계청 남원사무소에서는 공무원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. 12. 19.  
호남지방통계청장

### 1. 모집인원 및 채용기간

| 관할 지역      | 모집 구분        | 모집 인원 | 계약 방법 | 채용기간                   | 수 당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남원사무소 관할지역 | 결원대체 기간제 근로자 | 1명    | 근로 계약 | '23. 1. 2.~'23. 2. 10. | 69,230원 (1일기준) | 인력 수급 여건에 따라 모집기간 변경 될 수 있음 |

※ 관할지역 : 남원시, 장수군, 순창군, 임실군

### 2. 담당업무 및 채용 선발인원

담당업무

| 담당업무 | 주요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통계조사 | ·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등 경상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|

채용 선발인원

| 채용인원 | 서류전형 선발인원 |
|------|-----------|
| 1    | 5배수 까지    |

### 3. 모집방법

1차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## 4. 응시 자격요건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모집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  - ※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으며, 계약기간 중 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
- 남원사무소 관내 지정된 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
- 대상처 방문조사, 응답자 설득, 전화 질의조회, 전산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 - ※ 저소득층의 범위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 - ※ 다자녀보육가구: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  - ※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점 부여
  - ※ 국가유공자 범위: 본인 및 그 유족, 자녀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

## 5. 심사일정
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: 2022. 12. 27.(화) 15:00 이후
- 면접일시 및 장소: 2022. 12. 28.(수) 10:00 ~, 남원사무소 2층 소장실
- 최종합격자 발표: 2022. 12. 28.(수) 17:00 이후
  -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(<http://kostat.go.kr/hnro>) '모집정보'에 공고

## 6. 응시원서 접수

○ 접수기간: 2022. 12. 19.(월) ~ 2022. 12. 26.(월) 18:00 까지

○ 접 수 처

| 기관명 및 부서 | 담당자 | 주소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
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남원사무소    | 한윤희 | 남원시 요천로1393 | 063-630-6024 |

○ 접수방법: 방문접수(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)

- 방문접수는 평일 9시~18시 이내에 접수가능

## 7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 1부(붙임 1 참조)

○ 자기소개서 1부(붙임 2 참조)

○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※ 통계청외 경력

○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,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) 및 다자녀 보육 가구(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·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특수임무유공자 예우,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4조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운전면허증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표창 내역 1부(해당자에 한함)

○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붙임 3 참조)

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-붙임4 참조)

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상 확인서) 제외
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※ 채용서류(응시원서, 자격증명서, 기타 증명서류) 반환

-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 합격자 공고일(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)로부터 15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, 20일간 신청을 받음
- 청구기간: 2023년 1월 13일 ~ 2023년 2월 1일

## 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- 채용기간 중 해외여행 등을 자제해야 함
- ※ 단, 해외여행이 가능한 경우
  - 기간제근로자(경상업무)
    - 휴일 또는 연(월)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함



【붙임2】

## 자 기 소 개 서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업무명 | 경상 및 연간조사 일반 | 분야           | 기간제근로자 |
| 성명  |              | 연락처<br>(휴대폰) |        |

### 【 과거 경력관련 내용 등 】

- 과거 경력, 일반경력(지자체 통계조사 경력 등) 등을 자유롭게 작성

### 【 지원동기 및 포부를 자유롭게 기재 】

- 지원동기 및 포부, 통계청 표창 및 체험수기 제출내역, 조사에 임하는 각오 등을 자유롭게 작성(맑은고딕, 12p)





【붙임4】 해당자만 제출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호남지방통계청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기간제근로자 채용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| 연번 | 행정정보명 | 연번 | 행정정보명 |
|----|-------|----|-------|
|    |       |    |       |
|    |       |    |       |
|    |       |    |       |
|    |       |    |       |
|    |       |    |       |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) 번호 :

#### 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